

Inward FDI 통계 수집 법제화 벤치마킹 조사

KOTRA자료 12-016



KOTRA자료12-016

Inward FDI 통계 수집 법제화 벤치마킹 조사

2012. 5.

목 차

Executive Summary	1
요약표	3
1. 미국	15
2. 호주	16
3. 일본	17
4. 네덜란드	19
5. 싱가포르	21
6. 캐나다	22
7. 영국	27
8. 독일	30
9. 프랑스	32

Executive Summary

- **(조사배경)** 올바른 FDI 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FDI 통계 데이터의 수집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원활한 FDI 통계 집계를 위해서는 FDI 통계 수집의 법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동보고서에서는 FDI 통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총 9개국의 Inward FDI 통계 수집 관련 법제화 사례를 조사함
- **(통계 조사 기관 현황)** 영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4개국의 경우 통계청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4개국은 국제자금수지를 파악하는 중앙은행에서, 미국의 경우 상무부에서 Inward FDI 통계 조사를 담당
- **(통계 조사의 법적 근거)** Inward FDI 통계 조사는 영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4개국의 경우 일반 통계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고, 일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4개국은 외환거래법 혹은 무역법 등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미국만 유일하게 국제투자통계 집계와 관련된 특정 법률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s Act)에 의거 실시되고 있음
- **(강제조항 여부)**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조사 불응시의 처벌 규정 등 조사 관련 강제 조항*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네덜란드만이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 예컨대 대부분의 국가가 조사 불응 시 US 백 달러 ~ US 25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FDI 집계 주기)** Stock의 경우 연 1회 조사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Flow의 경우 연간 단위로 조사하는 영국 및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분기 (미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혹은 월 (일본, 독일, 프랑스) 단위로 더 빈번하게 발표하는 것으로 드러남

* 미국은 연간 및 분기 보고서와 더불어 5년 주기의 상세 보고서도 발표하는 등 조사 주기에 따라 조사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음

○ **(조사대상)** 미국*,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4개국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독일 5개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샘플링을 통해서 일부 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미국의 경우 5년 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조사 시에는 자산, 매출, 순이익 중 어느 하나라도 40백만/120백만/275백만 달러 이상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내용의 조사를 실시

** 예컨대 독일의 경우 자산 총액이 300만 유로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조사

○ **(통계수집방식)**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6개국은 설문을 통해서 FDI 통계를 수집하고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 기업이 중앙은행에 직접 보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집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기업등록청에 등록되는 기업재무제표를 통해 집계되고 있음

Inward FDI 통계 선진국 벤치마킹 조사 요약표

	미국	호주
통계담당부서	상무부(BEA) 국제경제조사부 산하 외국인투자조사과, Inbound FDI: Gregory Fouch 외9명, Outbound FDI: Mark New 외11명	연방 재무부 소속 통계청(ABS) 내 International Investment Section 부서, 35명
조사주기	연간/분기/5년	분기 (매년 5/6월 보고서 발행)
조사기간	- 분기별: 매분기 마감 후 30일 이내 - 연간: 매년 5월말 - 5년 주기: 5월말 (최근: 2007년)	7-9월, 10-12월, 1-3월, 4-6월
조사방식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설문 사이트: https://www.bea.gov/efile/password/default.cfm - 모두 BEA에서 직접 접수	전화, 오프라인 설문 - 통계청 해당 기업 명부 운영 및 조사 응답자 훈련 관련 직원 약 35명
데이터소스	상기 3개 설문조사 - BEA에서 집계되는 FDI 통계는 상 기 3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 보 완되며 기타 자료원은 활용하지 않음	- ABS의 직접조사 : 분기별로 호주 내 거주 투자가 및 해외 거주 투 자가 대상으로 호주 투자에 대하 여 직접 조사 실시 - 호주 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설 문조사 : 투자 승인한 호주 내 해 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매년 설 문조사 실시
통계수집근거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s Survey Act <내용> -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및 처벌: ▪ 최소 2,500불 이상 25,000불 이하의 벌금과 민사 처벌 ▪ 고의적 불응 시, 10,000불 이 하의 처벌과 관련자 1년 이하 의 구속	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 <내용> -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및 처벌: ▪ 위 법령 하에 조사자는 관련 응답자나 기관에 일정한 날짜 까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서류를 발행할 권한을 가지 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p>법정에 회부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의 응답자는 공식적인 통계 수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강제적인 법적조치보다 응답자의 협조를 통한 통계 조사 완료를 추구
조사범위	외국인이 직간접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국기업	호주 거주 투자자와 해외 거주 투자자 전수 조사
조사기준		- 샘플링 조사 없음

	일본	네덜란드
통계담당부서	① 재무성 국제국 환율시장과, 10명 ② 일본은행 국제수지과, 5명 (국제수지 담당부서 총인원 60명)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의 Statistics and Information Division (담당자: Sylvia Butzke), 187명 * Inward FDI 전담자는 없음
조사주기	연간/분기/매월	분기(flow)/연간(stock)
조사기간	① 재무성 연간: 1~12월 분기: 1~3월, 4~6월, 7~9월, 10~12월 매월: 매월1일~말일 ② 일본은행 연간: 1~12월 (발표 시기: 5~6월) 분기: 1~3월, 4~6월, 7~9월, 10~12월 매월: 매월1일~말일	상시
조사방식	오프라인 설문 - 투자자가 일본은행에 국제자금거래기록(투자보고서)제 출 - 일본은행 보고서를 받아 재정성에서 유선 확인	대기업 직접보고, 금융기관 보고 - 대기업이 FDI에 대해 DNB에 직 접 보고한 후, 일부 수정을 거쳐 근사치를 공식 발표 자료로 활용 -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자신들 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FDI Transaction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 2003년 이전에는 금융기관들이 FDI Transaction을 모아 보고하였 으나 행정부담 증가로 제도 변경
데이터소스	국제자금거래기록(일본은행) - 해당 조건(3000만 엔 이상 및 지 분10% 이상)을 충족한 송금만 반 영	기업별 transaction 신고 자료 - 보충자료: Euroclear Netherlands (Listed Company의 경우), Kadaster(부동산 투자의 경우)
통계수집근거 1*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55조의 5	별도 법령 존재하지 않음

	<p><내용></p> <p>- 임의 혹은 강제 조항:</p> <p>1. 외국투자자는 대내직접투자 등 (상속, 유증, 법인의 합병, 기타의 사정을 감안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을 하였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해당 대내직접투자 내용, 실행시기,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무각료 및 사업소관 각료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신고해야 하는 대내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p> <p>2. 외국 투자가 이외인 자(법인, 기타단체 포함)가 외국 투자자를 위해서 해당 외국 투자가 명의를 따르지 않고 하는 대내직접투자 등에 상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 투자가 이외의 자를 외국 투자자로 간주하고 전항규정을 적용한다.</p>	<p>- 1998 Bank Act: 1998년 6월 1일부로 De Nederlandsche Bank N.V.가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ESCB)의 멤버로 설립되는 법적 기반 마련</p> <p>- Bank Act에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통계자료 수집</p> <p>- 통계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별도의 법적 의무는 없음</p>
통계수집근거 2*	<p>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71조의 6</p> <p><내용></p> <p>-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및 처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조사범위	3000만 엔 이상의 직접투자에 해당된 송금	300개 대기업, 부동산 투자
조사기준	- 일정 자산 규모: 3000만 엔 이상	- 최초 통계치 발표 이후 Listed

	및 지분 10% 이상의 직접투자 - 조사는 모든 대내투자기업이 해당됨 - 샘플링 조사 없음	Company, 부동산 투자, 추가적인 금융권 보고 자료에 따라 지속적으로 통계치 변동 - 최종 통계치는 3~4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확정
--	--	--

* 통계수집근거 1, 2는 복수의 법률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하기 위함이며 별도의 분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싱가포르	캐나다
통계담당부서	통상산업부 산하 통계청, 13명	캐나다 통계청 Balance of Payments Division의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10명 내외(대략)
조사주기	연간	분기/연간(연말)
조사기간	2년 - 연말 스톡 기준으로 2년 전 자료를 발표하며, 발표 이후에도 향후 몇 개월간 수정보완을 하므로 통상적으로 2년에서 2년 6개월 소요	분기/연도 말에 우편발송 후 수령일로부터 3~4주 이내 회신
조사방식	기업재무제표 - 신규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청(ACR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BizFile에 등록해야 하며, 동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재무제표를 비롯한 관련 정보를 매년 제출해야 함	오프라인설문 - 통계청 직접조사 혹은 대행사 외주 가능(외주 대행사 이용 가능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명기되어 있음)
데이터소스	기업재무제표 및 ACRA등록 정보	FDI 통계수치 수집 관련 설문지
통계수집근거 1	Statistics Act <내용> - 통계청의 구성 및 법적권한 및 영역, 통계청장의 법적의무와 정보요청 등에 관한 권리사항, 통계를 위해 수집된 정보의 비밀보장 등에 관한 규정 참고: http://statutes.agc.gov.sg/aol/search/display/view.w3p?page=0;query=CompId%3A0fdd3d9a-e9fa-4758-a8c2-6e5849fa6b35;rec=0	Statistics Act <내용> - 임의 혹은 강제 조항: ▪ 제23조 2항: 통계수집의 강제 근거 조항 -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및 처벌: ▪ 제31조: 500달러 이하 벌금 또는/ 및 3개월 이하 징역)
조사범위	외투기업 전수조사	일부 샘플링 조사로 타깃기업 설정

		하여 전수조사
조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기준: 타깃기업 3,200~6,000개사를 설문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Target 기업 수 100%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분기기준: 약 9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월 기준으로는 더 적은 수의 기업, 약 1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통계적으로 추가확인 조정 작업 등 수행)

	영국	독일
통계담당부서	FDI Statistics i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통계청), Economic Surveys Division (통계청), Data Validation Team, 약 40여명	독일연방은행 Fachbereich Statistik, Gruppezur Bestandserhebung ueber Direktinvestitionen, 신고내용 관리 및 분석 담당자 20명, 서비스 담당자 10명
조사주기	연간	월간(flow)/연간(stock)
조사기간	3-9월	- flow: 약 6주 - stock: 약 15개월
조사방식	오프라인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가 매해 3월 관련 비즈니스로 배송되며 회신이 없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독촉편지를 송부 - 설문지 발송 이후 전화, 팩스, email을 통해 계속해서 Follow up을 시행. 회신된 설문은 여러 번에 걸쳐 미기재 내용 여부 및 실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 FDI 설문은 매해 9월 중순에 마감되며 9월부터 12월초까지 분석작업이 이루어지고 12월초(2011년의 경우 12월 8일) 통계보고서가 발표됨 - 보고서 발표 이후 지역 및 사업별 추가 분석 작업이 1월말까지 진행된 후 3월말에 확정 통계자료보고서 발행(Business Monitor MA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는 별도로 없으며, Aussenwirtschaftsverordnung 조 56 a,b, 및 조 58 a,b에 해당되는 기업신고내용을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함
데이터소스	설문	기업 신고 내용
통계수집근거 1	Statistics of Trade Act 1947 (상업 통계법) <내용> -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및 처벌:	Bundesbankgesetz 18조 및 Bundesstatistikgesetz 9, 15 및 16조 <내용>

	제6조에 의거 관련 자료수집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수집목적: 외국무역 감시 - 임의 혹은 강제조항: 독일 연방은행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 투자기업 혹은 주식회사들을 상대로 은행, 금융관련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에는 독일 연방통계법 9, 15 및 16조가 적용된다.
통계수집근거 2		<p>Aussenwirtschaftsverordnung 70조항 6절 10번 및 Aussenwirtschaftsgesetz 33조 5절 2번</p>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및 처벌 관련: Aussenwirtschaftsverordnung 56a조 1항 및 56b조 1항 1절, 3항 또는 4항에, 또한 58a조 1항 및 58b조 1항 1절, 2항 또는 3항에 [...]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거나 전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제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Aussenwirtschaftsgesetz 33조 5절 2번에 따른 외국무역법을 위반한다.
조사범위	외투기업 일부	외투기업 일부
조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샘플링 조사: 먼저 영국의 회사청 등록내용 및 부가가치세 시스템 등록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여 외국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은 사항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함 - 그 외로는 Dun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low: 국제수지 통계자료는 거래가 성사된 시점의 시장가치에 준거한다. 자산에 관한 정보는 FDI 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산출한다. - stock: Aussenwirtschaftsverordnung 조56a,b 및 조58a,b에 의거

	<p>Bradstreet(D&B)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외국자본 유입 및 영국회사들의 해외투자정보를 받아서 샘플링 대상에 포함시킴</p> <p>* ONS(영국통계청) 발신내용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업기준: 1) 자산총액이 300만 유로 이상 기업 중 결산일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모든 기업, 2) 자산총액이 300만 유로 이상인 외국기업 지사, 3) 간접적 자본참가일 경우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을 50% 이상을 소유해야 함 ▪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의 경우: b)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의 경우: c) 신고 의무에 해당되는 해외 간접적 자본참가 기업의 경우: <p>*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무역관 회신 설문지 참고)</p>
--	---	---

프랑스	
통계담당부서	프랑스 중앙은행 국제수지부(총괄부서), 설문통계부&직접투자팀(지원부서), 담당자수 미공개 *기타 업무협조 기관: 프랑스 통계청(INSEE), 재경부 산하 국고국(Tresor), 산업부 산하 산업통계국(SESSI), 프랑스 투자청(AFII)
조사주기	월간(flow)/연간(stock)
조사기간	- flow: 상시 - stock: 2-8월
조사방식	- flow: 기업직접보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소재 모든 기업은 재경부와 중앙은행에 flow를 보고 해야 함. 중앙은행 설문(FATS Data), 기업 회계정보 수집(SUSE), 재무제표, 추가정보,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 stock: 오프라인설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 기타 지원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AFI: 은행사 대상, 중앙은행에서 수집 2) SSUR: 보험사 대상, Commission of Control for Insurance Companies에서 수집 3) FIBEN: 기업재무제표 (매출액 75만 유로 이상 50만개 기업이 조사대상에 들어감. 매년 4천개사 추가) 4) SESSI: 근무자 20명 이상 기업에 대해 설문 실시 5) DAFSA: IHS Global Insight에서 사기업 대상 자료 수집 6) 기타 기업 재무제표 등을 활용
데이터소스	신고/설문/기타정보공유등
통계수집근거 1	Monetary and Financial Code (금융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Loi) n°2000-321/조항22 - 조항 L141-7, 조항 L151-1 이하, 조항R151-1 이하 등 - 법령 2003-196 (2003.3.7) 'Titre II/III' <Titre II/II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혹은 강제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 2: ① 프랑스 거주/비거주 기업 간 12,500유로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는 재경부에 자진신고(매월), ② 프랑스 모든 기업은 외국기업(기관)과의 모든 거래를 중앙은행에 신고해야함(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항 3 : 프랑스 거주자는 반드시 프랑스의 External position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중앙은행에 신고해야함 ▪ 조항 4 : 15백만 유로가 넘는 투자는 반드시 중앙은행에 신고해야함(통계수집)
통계수집근거 2	<p>금융재정법L.151-3/L.165-1</p> <p><내용></p> <p>-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및 처벌 관련</p>
조사범위	외투기업 전수
조사기준	<p>- 대상기업: 아래 항목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증권(Equity security): 120만유로 이상 ▪ 직원 수 : 500명 이상 ▪ 매출액 : 6천만 유로 이상(해외 부문 포함) ▪ 전년도 조사 대상 중 그룹 총괄로 분류된 기업 등

1. 미국

□ 외국인투자(FDI) 통계 수집기관

- 수집기관: 상무부 산하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 FDI 담당부서명: 국제경제조사부 산하 외국인투자조사과 (Foreign Investment Division)
- FDI 통계 담당자
 - Inbound FDI: Gregory Fouch 외 9인
 - Outbound FDI: Mark New 외 11인

□ Inward FDI 통계 조사 방식

- 조사 주기: 분기별, 연간, 5년 주기의 설문조사
- 조사 기간:
 - 분기별: 매 분기 마감 후 30일 이내
 - 연간: 매년 5월말
 - 5년 주기: 5월말 (최근 조사년도: 2007년)
- 조사 방식:
 - 온라인/오프라인 설문 가능
 - 온라인 설문 사이트: <https://www.bea.gov/efile/password/default.cfm>
 - 온라인/오프라인 설문 모두 BEA에서 직접 접수

□ Inward FDI 데이터 소스

- BEA에서 집계되는 FDI 통계는 상기 3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 보완
- 기타 자료원은 활용하지 않음

□ 설문 실시 시 inward FDI 통계 수집 근거

- 관련 법령: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s Survey Act
- 대상: 외국인이 직간접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국 기업
-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및 처벌
 - 조사 불응 시 최소 2500불 이상 25,000불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처벌

- 고의적 불응 시, 10,000불 이하의 처벌과 관련자 1년 이하의 구속

□ Inward FDI 통계 조사 대상 범주

- 조사 범위: 외국인이 직간접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국기업

2. 호주

□ 외국인투자(FDI) 통계 수집기관

- Inward FDI 통계 담당부서명: 연방 재무부 소속 통계청(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내 'International Investment Section' 부서에서 담당
- Inward FDI 통계 담당자수: 35명

□ Inward FDI 통계 조사 방식

- 조사 주기: 분기별 조사 (매년 5/6월 통계 분석 보고서 발행)
- 조사 기간: 7-9월, 10-12월, 1-3월, 4-6월
- 조사 방식: 전화 및 설문지 발송을 통한 조사 (통계청 해당 기업 명부 운영 및 조사 응답자 훈련 관련 직원 약 35명)

□ Inward FDI 데이터 소스

- 호주 통계청(ABS)은 분기별로 호주 내 거주 투자가 및 해외 거주 투자가를 대상으로 호주 투자 대하여 직접 조사 실시
- 호주 투자심의위원회(FIRB)에서 매년 투자 승인한 호주 내 해외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실시

□ 설문 실시 시 Inward FDI 통계 수집 근거

- 관련 법령: 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
-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등 처벌
 - 조사자는 관련 응답자나 기관에 일정한 날짜까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서류를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회부

할 수 있음

- 대다수의 응답자는 공식적인 통계 수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강제적인 법적 조치 보다 응답자의 협조를 통한 통계 조사 완료를 추구함

* 첨부 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 참조

Inward FDI 통계 조사 대상 범주

- 조사 범위: 호주 거주 투자자와 해외 거주 투자자 전수 조사 실시
- 샘플링 방식 사용하지 않음

3. 일본

외국인투자(FDI) 통계 수집기관

- Inward FDI 통계 담당부서명
 - ① 재무성: 국제국 환율시장과
 - ② 일본은행: 국제 수지과
- Inward FDI 통계 담당자수
 - ① 재무성: 10명
 - ② 일본은행: 5명 (국제수지 담당부서 총인원 60명)

Inward FDI 통계 조사 방식

- 조사 주기: 연간/분기/매월
- 조사 기간: ① 재무성
 - 연간: 1~12월
 - 분기: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 매월: 매월1일~말일
 - 조사개시 시기: 1985년~
- ② 일본은행
 - 연간: 1~12월 (발표 시기 5~6월)

분기: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매월: 매월1일~말일

조사개시 시기: 2004년~

- 조사 방식: 오프라인 설문
 - 일본은행에 투자자가 국제자금거래기록(투자보고서) 제출
 - 일본은행 보고서를 받아 재정성에서 유선확인

□ Inward FDI 데이터 소스

- 국제자금거래기록(일본은행)
 - Inward FDI에 해당조건(3,000만 엔 이상 및 지분 10% 이상)을 클리어한 송금만 반영

□ 설문 실시 시 inward FDI 통계 수집 근거

- 관련 법령 1: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55조의 5
- 임의 혹은 강제 조항
 1. 외국투자자는, 대내직접투자 등(상속, 유증, 법인의 합병기타의 사정을 감안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을 하였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해당 대내직접투자 내용, 실행시기,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재무각료 및 사업소관 각료에게 보고해야 하다. 단, 제2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신고해야하는 대내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외국투자가 이외인자(법인, 기타단체 포함)가 외국투자자를 위해서 해당 외국투자가 명의를 따르지 않고 하는 대내직접투자 등에 상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외국투자가 이외의 자를 외국투자자로 간주하고, 전항 규정을 적용한다.
- 관련 법령 2: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71조의 6
-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등 처벌
 - 제55조의 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 Inward FDI 통계 조사 대상 범주

- 조사 범위 : 3,000만 엔 이상의 직접투자에 해당된 송금
- 일부의 경우 조사 기준
 - 일정 자산 규모: 3000만 엔 이상 및 지분 10%이상의 직접투자
 - 직접투자일 경우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거해 해당기업은 반드시 재무 각료 및 사업소관 각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조사는 모든 대내투자기업이 해당됨
 - 샘플링 조사 없음

4. 네덜란드

□ 외국인투자(FDI) 통계 수집기관

- 수집기관: DNB (De Nederlandsche Bank, 네덜란드 중앙은행)
- Inward FDI 통계 담당부서명: Statistics and Information
 - Division Director: Sylvia Butzke (2012.3)
- Inward FDI 통계 담당자수: Inward FDI 통계만 담당하는 전담자는 없으며, Division 전체 인력은 187명

□ Inward FDI 통계 조사 방식

- 조사 주기: Flow (분기) / Stock (연간)
- 조사 기간: 상시
- 조사 방식
 - 2003년 이전에는 금융기관들이 FDI Transaction을 모아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행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2003년에 제도를 변경
 - 2003년 이후부터는 1단계로 약 300여개의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FDI에 대해서 DNB에 직접 리포트하고, 추가로 일부 수정을 거친 근사치를 공식 발표 자료로 활용
 - 대기업 이외에 금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FDI Transaction에 대해서 보고

- Listed Company에 대한 FDI는 Euroclear Netherlands의 자료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록기관인 Kadaster의 자료를 별도로 활용

Euroclear Netherlands

- 네덜란드 주식시장인 Euronext의 중앙 예탁결제업무(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CSD))를 담당하는 기관
- 설립: 1977년
- 한국의 “한국예탁결제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 Euronext를 이루는 파리, 브뤼셀의 예탁결제원과 함께 ESES(Euroclear Settlement of Euronext-zone Securities)를 구성
-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약 450개 금융기관이 ESES를 활용중이며, 하루 약 100,000건의 transaction을 처리 (총 예탁된 유가증권 약 6조 유로)

Kadaster

- 네덜란드의 공식 토지등록기관(Dutch Land Registry Office)으로, 주택/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항공기와 같은 자산에 대한 등록도 담당
- 설립: 1832년
- 총 직원수: 2,033명

Inward FDI 데이터 소스

- 주 데이터 소스: 기업별 transaction 신고자료
- 보충자료: Euroclear Netherlands (Listed Company) / Kadaster (부동산 투자)

설문 실시 시 inward FDI 통계 수집 근거

- 관련 법령: 별도 법령은 존재하지 않음
- 1998 Bank Act: 1998년 6월 1일부로 De Nederlandsche Bank N.V.가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ESCB)의 멤버로 설립되는 법적 기반 마련
- Bank Act 에 정의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통계자료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별도의 법적 의무는 없음

Inward FDI 통계 조사 대상 범주

- 조사 범위: 300개 대기업 + 부동산투자
- 최초 통계치 발표이후 Listed Company, 부동산 투자, 추가적인 금융권 보고 자료에 따라 지속적으로 통계치가 변동
- 최종 통계치는 3~4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확정

5. 싱가포르

□ 외국인투자(FDI) 통계 수집기관

- Inward FDI 통계 담당부서명: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 Industry) 산하 통계청(Business Statistics Division,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 Inward FDI 통계 담당자수: 13명

□ Inward FDI 통계 조사 방식

- 조사 주기: 연간
- 조사 기간: 2년
 - 연말 스톡기준으로 2년 전 자료를 발표하며, 발표이후에도 향후 몇 개월 간 수정보완을 하므로 통상 2년~2년 6개월 소요
- 조사 방식: 기업 재무제표 활용
 - 신규회사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청(ACR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BizFile에 등록하게 되어있으며, 동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 재무제표를 비롯한 관련정보를 매년 제출하게 되어있음

□ Inward FDI 데이터 소스

- 기업재무제표 및 ACRA 등록 정보 활용

□ 설문 실시 시 inward FDI 통계 수집 근거

- 관련 법령: Statistics Act
- 주요내용: 통계청의 구성 및 법적권한 및 영역, 통계청장의 법적의무와 정보요청 등에 관한 권리사항, 통계를 위해 수집된 정보의 비밀보장 등

에 관한 규정

- 싱가포르 통계청 웹페이지에서 전문 확인 가능

<http://statutes.agc.gov.sg/aol/search/display/view.w3p?page=0;query=CompId%3A0fdd3d9a-e9fa-4758-a8c2-6e5849fa6b35;rec=0>

□ Inward FDI 통계 조사 대상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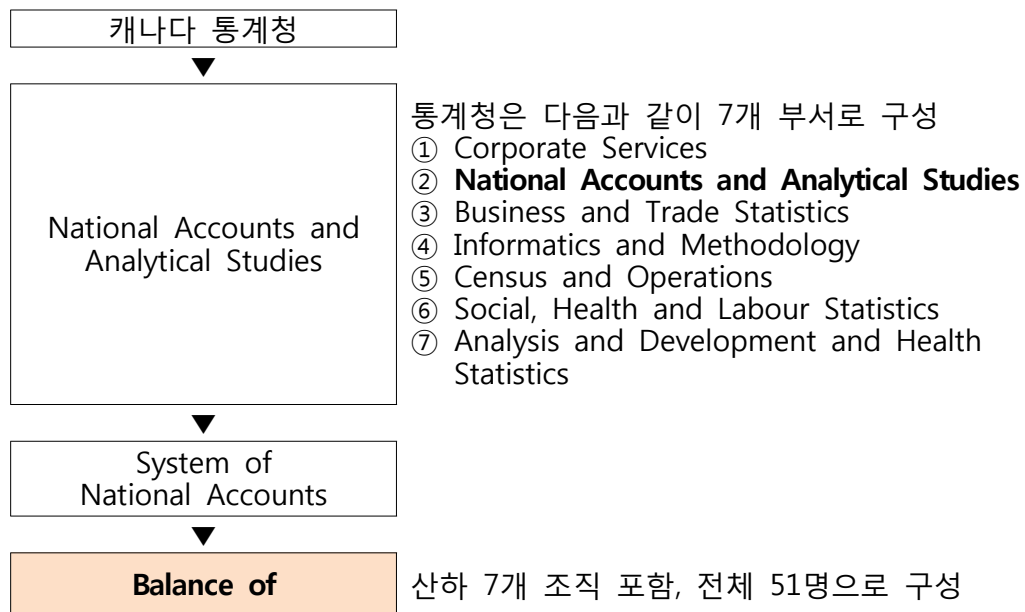
- 조사 범위 : 외투기업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각 기업의 관련 데이터는 위에서 언급한 ACRA 등록 정보를 토대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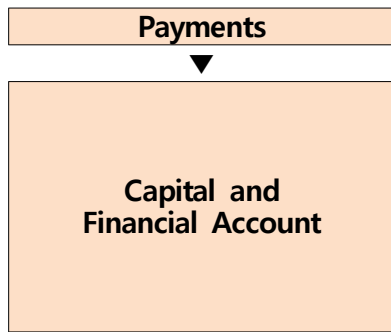
6. 캐나다

□ 외국인투자(FDI) 통계 수집기관

- 수집기관: 캐나다 통계청
- 담당부서명: 'Balance of Payments' Division의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 담당자수 : 직접투자통계 직접 담당자는 약 10명 내외 수준
 - * 해당 업무 일부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상기 인원은 대략 수치

※ 캐나다 통계청 조직도 중 관련 부분





- 최소단위 조직으로, **5명으로 구성**
- 동일한 Level의 'Balance of Payments' 산하 부서로 다음 6개가 더 있음.
(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Current Account / IIP Special Projects / Operations / Research and Analysis / Redesign / Systems

자료 :

Government Electronic Directory Services:

<http://sage-geds.tpsgc-pwgsc.gc.ca/cgi-bin/direct500/eng/XEou%3dCFA-CCF%2cou%3dBOP-BDP%2cou%3dSNA-SCN%2cou%3dNAAS-CNEA%2cou%3dSC-SC%2co%3dGC%2cc%3dCA>

Statistics Canada Corporate Business Plan 2009/2010 to 2011/2012:

<http://www.statcan.gc.ca/about-apercu/cbp-pae/pdf/cbp-pea-eng.pdf> (조직도: 23 페이지)

Inward FDI 통계 조사 방식

- 조사 주기: 분기/연간
- 조사 기간: 오프라인 설문지 수령일로부터 3~4주 이내 회신
 - 통계청에서 해당 분기/연도 말에 우편 발송
- 조사 방식: 오프라인(우편) 설문
 - 통계청 직접 조사 혹은 대행사 외주 가능
 - 외주 대행사 이용 가능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명기되어 있음

Inward FDI 데이터 소스

- 해외직접투자 통계수치 수집 관련 설문지(첨부 5개 예 참조)
 - 조사기간(연간/분기) 및 Flow/Stock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른 설문지를 이용
 - FDI 외, 기타 유사한 관련 통계수치 동시 수집 확보를 위해서도 여러 설문지들이 이용되고 있음

- Questionnaire(s) and reporting guide(s) - Canada's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IP) :

http://www23.statcan.gc.ca:81/imdb/p2SV.pl?Function=getInstrumentLink&SurvItem_Id=1463&Query_Id=128321&Query=instance&lang=en&db=imdb&adm=8&dis=2

- Questionnaire(s) and reporting guide(s) - Canada's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

http://www23.statcan.gc.ca:81/imdb/p2SV.pl?Function=getInstrumentLink&SurvItem_Id=116668&Query_Id=127854&Query=instance&lang=en&db=imdb&adm=8&dis=2

□ 설문 실시 시 inward FDI 통계 수집 근거

- 관련 법령: 통계법('Statistics Act')

* 통계법 전문 Web 주소: <http://www.statcan.gc.ca/about-apercu/act-loi-eng.htm>

- 통계수집의 강제 근거 조항: 동법 제23조 2항

23. (2) Subject to section 8, a person to whom a form is sent pursuant to subsection (1) shall answer the inquiries thereon and return the form and answers to Statistics Canada properly certified as accurate, not later than the time prescribed therefor by the Minister and indicated on the form or not later than such extended time as may be allowed in the discretion of the Minister. 1970-71-72, c. 15, s. 22; 1980-81-82-83, c. 47, s. 41.

- 통계 설문지 작성제출 불응 시 처벌 : 동법 제31조

- 500달러 이하 벌금 또는/및 3개월 이하 징역

False or unlawful information

31. Every person who, without lawful excuse, (a) refuses or neglects to answer, or wilfully answers falsely, any question requisite for obtaining any information sought in respect of the objects of this Act or pertinent thereto that has been asked of him by any person employed or deemed to be employed under this Act, or (b) refuses or neglects to furnish any information or to fill in to the best of his knowledge and belief any schedule or form that the person has been required to fill in, and to return the same when and as required of him pursuant to this Act, or knowingly gives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or practises any other deception thereunder is, for every refusal or neglect, or false

answer or deception,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five hundred dollars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or to both. 1970-71-72, c. 15, s. 29.

□ Inward FDI 통계 조사대상 범주 및 방법

- 조사 범위 : 일부 샘플링 조사로 타깃기업 설정하여 전수조사
 - 캐나다 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 완전한 전수조사는 아님
 - 직접투자 통계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소 연간 기준으로는, 캐나다 내 대상 타깃 기업을 모두 조사
- 대상기업 선정 기준 및 샘플링 방식 등
 - 해당 통계청에서 관련 내부 자료 제공은 불가하다고 하며, 다만, 공개된 통계청 사이트를 조회할 것을 권유
- 조사대상 기업수
 - 연간 기준으로는 타깃기업 3,200~6,000개사를 설문 조사하고 있으며, 동 기업수는 Target 기업수 100%에 근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분기 기준으로는 상기 기업수(3,200~6,000)보다 적은 수의 기업(약900개사)을 대상으로 조사 및 월 기준으로는 더 적은 수의 기업(약100개사 이상) 대상으로 조사한 후, 통계적으로 추가 확인 조정 작업 등 수행

This is a sample survey with a cross-sectional design.

The quarterly questionnaires providing direct input to the Balance of Payments are sent to Canadian enterprises known to have or believed to have significant international activity. Roughly 6000 firms receive the annual questionnaires. Collection of this data on a quarterly basis is limited to approximately 900 firms with very high level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while there are slightly over 100 firms that are surveyed on a monthly basis.

The annual surveys are believed to cover close to 100% of the target population. Some quarterly data are modelled based on previous annual data.

자료(상기 외, 추가로 통계조사 방법 등 상세내용 기재되어 있음):

<http://www23.statcan.gc.ca:81/imdb/p2SV.pl?Function=getSurvey&lang=en&db=imdb&adm=8&dis=2&SDDS=1534>

<http://www23.statcan.gc.ca:81/imdb/p2SV.pl?Function=getSurvey&lang=en&db=imdb&adm=8&dis=2&SDDS=1537>

□ 캐나다 해외직접투자 통계수치 정보현황

- 정보원: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사이트: <http://www.statcan.gc.ca/start-debut-eng.html>
- 해외직접투자 관련 조회가능(대외공표) 주요 통계수치
 - Flow와 Stock 기준으로 분기/연도별 기준 집계 발표
 - Flow는 주요국만 공표 및 Stock 기준은 대부분 국가 공개
 - 국가별 및 산업별, 2개 기준을 포함한 수치는 주요국에 대해, 5대 산업에 대해서만 공표
 - 한국의 경우, 분기/연도별 Stock 기준 수치만 이용 가능

<캐나다 해외직접투자 대외공표 주요수치> 자료 : 캐나다 통계청

	Flow	Stock
주기	매분기/매년	매분기/매년
국가	주요국만 공표 (미국, 영국, 일본, 기타 EU국, 기타 OECD국)	거의 대부분 국가
산업	5대 산업별 (임업제지/에너지금속광물/기계 운송/금융보험, 서비스 및 소매/기타 산업)	세부 산업별

○ 관련 Web 주소 및 발간자료 현황

- Main Web 주소: 캐나다 통계청

http://cansim2.statcan.ca/cgi-win/cnsmcgi.exe?Lang=E&C2Fmt=HTML2D&CII Tpl=SNA___&ResultTemplate=THEMSNA4&CORCmd=GetWrap&CORId=122#HERE

National economic accounts: Direct investment (flows and positions) National Economic Accounts [Expand all levels]
 Close: Balance of payments
 Open: Current account and capital account

Open: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Close: Direct investment (flows and positions)
Table: Direct investment flows
Table: Direct investment flows by industry and type of transaction
Table: Direct investment flows by category of transaction
Table: Direct investment, acquisitions, sales and other flows
Table: Direct investment positions by country
Table: Direct investment positions by industry
Table: Direct investment positions by industry and country
Table: Direct investment positions by industry (NAICS)
Table: Direct investment positions by type of Canadian concern and capital invested
Open: Foreign affiliate trade statistics

* 동 Web 주소 화면 관련 부분

- 분기/연도별 발간 관련 자료명 : ‘Canada’s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Fourth Quarter 2011’

* 동 자료 Web 주소 :

<http://www.statcan.gc.ca/pub/67-001-x/67-001-x2011004-eng.pdf>

7. 영국

외국인투자(FDI) 통계 수집기관

- 수집기관: 통계청(Economic Surveys Division)
 - 영란은행과 여러 정부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집
 - 은행관련 분야의 자료는 영란은행에서 수집하고 그 외 산업분야는 통계청의 설문을 통해 수집
- Inward FDI 통계 담당부서명: FDI Statistics i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통계청), Economic Surveys Division(통계청), Data Validation Team
- Inward FDI 통계 담당자수: 약 40 명

Inward FDI 통계 조사 방식

- 조사 주기: 매해
- 조사 기간: 매해 3월부터 9월까지
- 조사 방식: 오프라인 설문
 - 설문지가 매해 3월 관련 비즈니스로 배송되며 회신이 없을 경우 2차례에 걸쳐 독촉 편지를 송부
 - 설문지 발송이후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계속해서 Follow up을 시행. 회신 된 설문은 여러 번에 걸쳐 미기재 내용 여부 및 실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 FDI 설문은 매해 9월 중순에 마감
 - 해당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는 9월부터 12월 초까지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며 12월 초에(2011년의 경우 12월 8일) 통계보고서 발표
 - 그 이후 지역 및 사업 별 추가 분석 작업을 1월 말까지 진행
 - 3월 말, 확정 통계자료 보고서 발행(Business Monitor MA4)

□ Inward FDI 데이터 소스: 설문

□ 설문 실시 시 inward FDI 통계 수집 근거

- 관련 법령: Statistics of Trade Act 1947 (상업 통계법) 제 6조
-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등 처벌
 - 관련 자료 수집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 할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 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Inward FDI 통계 조사 대상 범주

- 조사 범위: 외투 기업 일부
- 일부의 경우 조사 기준
 - 먼저 영국의 회사청 등록 내용 및 부가가치세 시스템 등록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 됨
 - 등록 사항을 파악하여 외국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은 사항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함
 - 그 외 Dun and Bradstreet (D&B)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외국 자본 유입 및 영국 회사들의 해외투자 정보를 받아서 샘플링 대상에 포

함시킴

- * Sampling 관련해서는 ONS (Office of National Statistic: 영국 통계청)이 보내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The surveys are run from a register, which is compiled primarily from administrative information such as VAT details from HM Customs and Excise and PAYE from the Inland Revenue. The register holds a number of variables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country of ownership for each group. It also holds information on which UK groups have foreign affiliates.

The main source of information on these foreign links for the latest annual survey was a Dun and Bradstreet publication. This was supplemented with information from ONS surveys into acquisitions and mergers of companies.

These surveys are conducted on a continuous basis, collecting information when a UK company acquires or disposes of a foreign company and similarly when a foreign company acquires or disposes of a UK company. Work is currently being undertaken to review the register sources used for the survey to ensure completeness. In particular, Dun and Bradstreet's 'WorldBase' information has been used to give a better estimate of the population of companies with foreign links.

Sample design:

Sampling of enterprise groups for inclusion is based on stratified designs for the known FDI historical population and the new register source provided by the Dun and Bradstreet publication 'WorldBase'.

For the known FDI population the outward survey strata are defined in terms of the value of the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t book value) of the foreign affiliates. Similarly for the inward survey strata are defined as the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t book value) of the UK group.

For the 'WorldBase' population the outward survey strata are defined in terms of the number of foreign affiliates held by the UK parent company. For the inward survey the strata are defined in terms of the turnover of the UK group.

For both populations, in order to maximise the survey coverag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ssets, all groups in the top strata (containing the largest businesses) are sent questionnaires.

However, in strata containing smaller businesses only a proportion are selected. Additionally, the sample of smaller businesses is rotated to minimise burden on the respondents.

The 2010 survey was based on combined sample sizes of Outward 1611 and Inward 2445"

Statistics of sample size and response rates – latest surveys conducted

Reference Period	2010 (Outward FDI)	2010 (Inward FDI)
Selected Sample Size	1,611	2,445
Numbers co-operating fully or partially	1,203	2,116
Non- Contacts/refusals	408	329
Overall response rate (%)	74.7	88.5

8. 독일

□ 외국인투자(FDI) 통계 수집기관

- 수집 기관: 독일 연방 은행
 - 책임 범위: 신고 내용 수집 및 분석, 통계 작성
- Inward FDI 통계 담당부서명: Fachbereich Statistik, Gruppe zur Bestandserhebung ueber Direktinvestitionen
- Inward FDI 통계 담당자수:
 - 20명: 신고 내용 관리 및 분석 담당자
 - 10명: 서비스 담당자

□ Inward FDI 통계 조사 방식

- 조사 주기: 매월(Flow), 연간(Stock)
- 조사 기간: 약 6주(Flow), 약 15개월(Stock)
- 조사 방식: 설문 조사는 별도로 없으며, Aussenwirtschaftsverordnung 조 56a, b, 및 조 58a, b에 해당되는 기업 신고내용을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함

□ Inward FDI 데이터 소스 : 기업 신고 내용

□ 설문 실시 시 inward FDI 통계 수집 근거

○ 관련 법령 1: Bundesbankgesetz 18조 및 Bundesstatistikgesetz 9, 15 및 16조

- 임의 혹은 강제조항:

독일 연방은행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금융 기관, 투자기업 혹은 주식회사들 상대로 은행, 금융 관련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에는 독일연방 통계법 9, 15 및 16조가 적용된다.

- 통계 수집 목적: 외국 무역 감시

○ 관련 법령 2: Aussenwirtschaftsverordnung 70조 항 6절 10번 및 Aussenwirtschaftsgesetz 33조 5절 2번

-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등 처벌:

Aussenwirtschaftsverordnung 56a조 1항 및 조 56b 1항 1절, 3항 또는 4항에, 또한 58a조 1항 및 58b조 1항 1절, 2항 또는 3항에 [...]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거나 전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제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Aussenwirtschaftsgesetz 33조 5절 2번에 따른 외국 무역법을 위반한다.

□ Inward FDI 통계 조사 대상 범주

1. Flow 통계 조사 대상 범주

○ 조사 범위 : 외투기업 일부

○ 일부의 조사 기준 : 국제수지통계 자료는 거래가 성사된 시점의 시장 가치에 준거한다. 자산에 관한 정보는 FDI 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산출한다.

2. Stock 통계 조사 대상 범주

○ 조사 범위 : 외투기업 일부

○ 일부의 조사 기준 :

Aussenwirtschaftsverordnung 조 56 a,b 및 조 58 a,b에 따라:

- 신고기업기준

- 자산총액이 300만 유로 이상 기업 중 결산일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모든 기업
 - 자산총액이 300만 유로 이상인 외국기업 지사
 - 간접적 자본참가일 경우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을 50% 이상을 소유해야 함
- 신고내용
- a)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의 경우
 - 기업명, 산업분야, 기업형태, 연간 매출액(금융기관일 경우 연간 총수입), 총종업원 수
 - 신고 조건(최초 신고 시): 창업, 매입, 인수합병 혹은 자산총액 기준치 초과
 - 신고시행일 기준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의 대차대조표
 - b)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의 경우
 - 투자가, 주소, 나라
 - 해당 기업 대차대조표상의 주식수
 - c) 신고 의무에 해당되는 해외 간접적 자본참가 기업의 경우
 - 기업명, 산업분야, 기업형태, 연간 매출액(금융기관일 경우 연간 총수입), 총종업원 수
 - 신고 조건(최초 신고 시): 창업, 매입, 인수합병 혹은 자산총액 기준치 초과
 - 대차대조표상의 주식수 및 직간접 지배력

9. 프랑스

□ 외국인투자(FDI) 통계 수집기관

- 수집기관: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 Inward FDI 통계 담당부서명:
 - 총괄부서명: Balance of Payment Direction(국제수지부)
 - 지원부서명: Surveys & Statistics Direction(설문통계부), Direct Investment Service(직접투자팀)

- Inward FDI 통계 담당자수: 미공개
- 기타 업무협조기관: 프랑스 통계청(INSEE), 재정부 산하 국고국(Tresor), 산업부 산하 산업통계국(SESSI), 프랑스 투자청(AFII) 등

□ Inward FDI 통계 조사 방식

* 프랑스 중앙은행은 IMF와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발표한 안내서 Reference Manual상의 통계 조사방법을 따르고 있음(1993년 발간, 2008년 개정)

- 조사 주기: 매월(Flow), 연간(Stock)
- 조사 기간: 상시(Flow), 2월~8월(Stock, 통계청 설문기간)
- 조사 방식

1) Flow

- 프랑스 소재 모든 기업은 재정부와 중앙은행에 flow를 보고해야함
- 중앙은행 설문(FATS Data), 기업 회계정보 수집(SUSE), 재무제표, 추가정보,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 Foreign AffiliaTes Statistics(FATS)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OFFPUB/KS-AR-09-014/EN/KS-AR-09-014-EN.PDF

2) Stock

① 주요 조사: 통계청 설문(이메일로 동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대상기업: 아래 항목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실시
 - 지분증권(Equity security): 120만유로 이상
 - 직원수: 500명 이상
 - 매출액: 6천만유로 이상(해외 부문 포함)
 - 전년도 조사 대상 중 그룹 총괄로 분류된 기업 등

※ Liaisons Financieres Entre Societes(LI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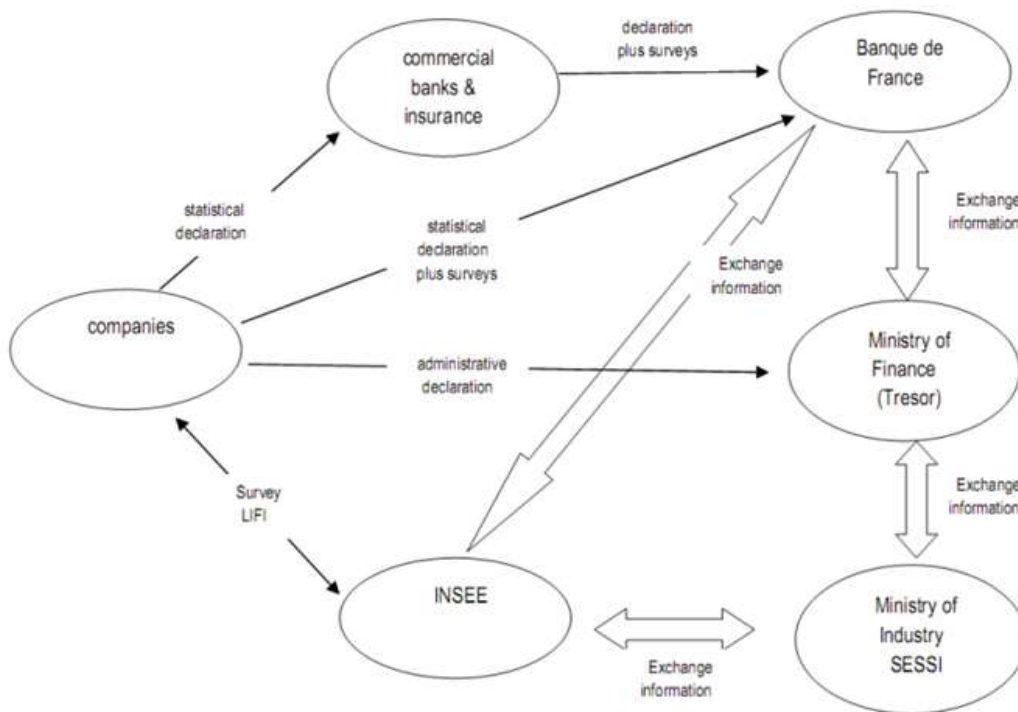
http://www.insee.fr/fr/methodes/sources/pdf/Questionnaire_Lifi.pdf

② 기타 지원 자료

- BAFI: 은행사 대상, 중앙은행에서 자료수집
- ASSUR: 보험사 대상, Commission of Control for Insurance Companies에서 자료수집

- FIBEN: 기업 재무제표(매출액 75만유로 이상 50만개 기업이 조사대상에 들어감. 매년 4천개사 추가)
- SESSI: 근무자 20명 이상 기업에 대해 설문 실시
- DAFSA: IHS Global Insight에서 사기업 대상 자료수집
- 기타 기업 재무제표 등 활용

□ Inward FDI 데이터 소스 : 신고/설문/기타 정보 공유 등(아래 참조)



□ 설문 실시 시 Inward FDI 통계 수집 근거

- 관련 법령 1: 금융재정법(Monetary and Financial Code)
 - 법률(Loi) n° 2000-321/조항 22
 - 조항 L 141-7, 조항 L 151-1 이하, 조항 R 151-1 이하 등
 - 법령(Décret) 2003-196(2003.3.7) '**Titre II/III**'
 - 임의 혹은 강제 조항

※ 'Titre II/III' 주요내용(법령 별첨 참조)

1) 조항 2

① 프랑스 거주/비거주 기업 간 12,500유로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는 재경부에 자진신고(매

월)

- ② 프랑스 모든 기업은 외국기업(기관)과의 모든 거래를 중앙은행에 신고해야함(매월)
- 2) 조항 3 : 프랑스 거주자는 반드시 프랑스의 External position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중앙은행에 신고해야함
- 3) 조항 4 : 15백만 유로가 넘는 투자는 반드시 중앙은행에 신고해야함(통계수집)
- 4) 조항 8-9 : 통계자료 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금융재정법 L.151-3/L.165-1에 따라 벌금 및 처벌조치

출처)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418526&dateTexte=&categorieLien=id#JORFSCTA000000892344>

- 관련 법령 2: 금융재정법 L.151-3/L.165-1
 -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등 처벌: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징수 및 처벌조치

Inward FDI 통계 조사 대상 범주

- 조사 범위: 외투기업 전수
 - 법령 2003-196(2003.3.7)에 따라 모든 기업이 조사 대상이 됨

KOTRA자료 12-016

Inward FDI 통계 선진국 벤치마킹 조사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2년 5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제작년도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KOTRA의 발걸음

윤리경영 | 고객의 신뢰와 함께 하는 책임경영

KOTRA는 국내 본사 및 전 세계 76개국에 뻗어 나가 있는 111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항상 책임을 다하는 Global Citizen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Global Standard를 실현하기 위해 KOTRA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 실천규정을 준수하고 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지침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국제 사회공헌 | The world in Korea, Korea in the world

해외무역관을 갖고 있는 KOTRA의 특성을 살려서 전세계 각 주재국의 특성에 맞는 CSR활동을 전개합니다. 일본 대지진시에는 피해지역에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아이티 지진시에는 구호단체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자폐아, 고아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이들을 상대로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사회에도 1사 1촌 활동, Adopt-A-Road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확충과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속의 당당한 한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녹색경영 | Clean KOTRA, Green KOTRA

KOTRA는 친환경제품 구매 및 녹색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중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린포럼, Green Hub Korea2011, 녹색산업 협력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에게 녹색분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증대하여 녹색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